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9년 10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 VR 체험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 이용료 항목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도 유료시설 용어 정의(안 제3조)

- VR 체험시설 설치에 따른 별도 유료시설 정의 신설

나. 이용료 조항 신설(안 제10조)

다. 이용료 환불 조항 신설(안 제11조)

라. 이용료 감면 조항 신설(안 제12조)

마. 이용료 납입 규정 신설(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2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 : 2019. 8. 29 ~ 9. 18
-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대상 아님 〔기획감사실-7673(2019.7.31.)〕
- 성별영향평가 분석 : 개선 사항 없음 〔가족지원과-30471(2019.7.29.)〕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시설”이란 공원 내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별도 유료시설”이란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체험시설 등 별도의 이용료를 납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이용료) 별도 유료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료의 환불)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에 따라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시설물의 파손으로 수리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시설물 이용 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이 성주군으로 되어 있는 군민
2. 65세 이상 노인
3. 관내·외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에 따른 감면 대상자

4. 단체: 시설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대상자가 포함되지 아니한 20명 이상

③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서류 포함)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료의 납입) 이용료의 수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성주군 금고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아니할 수 있다.

1.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입금

2. 신용카드로 징수한 경우 : 신용카드사에서 카드계좌로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입금

제3장 앞에 “제3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3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7조 앞에 “제3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
V.R 체험시설이용료(제10조 관련)

(단위: 원)

시 설 명	인원 및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4D 영상관	1인 1회	1,000	
VR체험시설	1인 1회	1,000	

※ 구입 효력은 당일 1회에 한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원시설”이란 공원 내 모든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시설”이란 공원 내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별도 유료시설”이란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체험시설 등 별도의 이용료를 납부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 설>	제10조(이용료) 별도 유료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이용료의 환불)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에 따라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시설물의 파손으로 수리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시설물 이용 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제12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다른 참전유공자 5.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이 성주군으로 되어 있는 군민 2. 65세 이상 노인 3. 관내·외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에 따른 감면 대상자 4. 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 대상자를 포함하지 아니한 20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단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이용료의 납입) 이용료의 수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성주군 금고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아니할 수 있다. 1.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입금 2. 신용카드로 징수한 경우 : 신용카드사에서 카드계좌로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입금
제10조 ~ 제12조 (생 략)	제14조 ~ 제16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
제3장 보칙	<삭 제>
제13조 (생 략)	제17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신 설>	제3장 보칙